

기술강국의 미래, KEIT가 열어갑니다.(KEIT Magic for Tech Leading Korea)



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


수신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
(경유)

제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관련 주요문의 안내

1.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합니다.

2. 관련 근거

가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총괄팀-519(2021.12.09), ‘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현장안착을 위한 협조 요청’

3. 상기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 지연으로 인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에 중앙행정기관(전문기관)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이슈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안내 하고자 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관련 주요문의 안내. 끝.

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



직원 김형철

전결 12/09
팀장 김태현

협조자

시행 사업총괄팀-519 (2021.12.09) 접수

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(신서동) / www.keit.re.kr /

전화 053-718-8343 전송 053-718-8494 / tourist@keit.re.kr / 비공개(5,6)

윤리경영, 보이지 않는 기술 경쟁력